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주 택 도 시 기 금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보증금을 취급·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 및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·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2조 제2항 제4호, 제26조 제2항 제8호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

제2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업무) ① (생 략) 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2조(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</u>
제2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확팀	
연 락 처	(044) 201 - 3347 (044) 201 - 4178